

○ **(해외자원) 핵심광물 등 자원확보를 위한 세제·재정지원 강화**

- ▶ 무형자산(광업조광권 등) 취득 위해 외국법인에 출자·용자시 세액공제 혜택 부여
- ▶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의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지분율 요건(현행 5% 이상)을 대폭 완화
- ▶ 해외주회사 개발사업 실패시 국내모기업 구상채권에서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
- ▶ 유전개발사업 출자율 상향(탐사 30%→40%, 개발·생산 12%→20%)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공공부문 지원 확대 검토

○ **(식량안보)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(밀·콩 등)에 대한 국내 생산기반 확충 및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**

- \* (국내) 가루쌀(밀 대체)산업 육성, 전략작물 직불금 신설 전문생산단지공공비축 확대 등 (해외) 비상시 반입명령 실효성 제고, 핵심유통시설 확보 등

**3] 경제블록화 및 양자·다자협업 등 네트워크 확장**

○ **(경제블록화)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<sup>1]</sup>, 반도체지원법<sup>2]</sup> 부담 최소화 및 기회 최대화를 위한 교섭지속·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**

- 1] 북미産 친환경차 세액공제, 청정 제조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포함
- 2] 對美 반도체 투자기업 대상으로 중국내 설비투자 제한 조건부 보조금 지원

○ **(양·다자협력) 미국·중국·아세안 등 거점별 공급망 협력 강화**

- \* (美) 경제안보 및 공급망 산업대화 본격화 (中) 공급망, 탄소중립 등 新경협외제 추진 (아세안·인도) 장관급 협의 재개하여 CEPA 개선(인도), 인니 신수도 인프라 협력 등 진전

**[5] 상생·지역균형 발전**

◇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및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, ESG 상생경영 확산 및 지방분권·균형발전 통한 지방시대 구현

**1] 기부 인센티브 확대 및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**

○ **(인센티브) 개인·기업의 기부확대·다변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**

- **자원봉사 등 용역기부의 세제지원 인정범위를 확대<sup>1]</sup> 하고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<sup>2]</sup> 검토**

- 1] (현행)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 → (개선) '특례기부금' 단체(국가·지자체·학교·병원 등)에 대한 자원봉사 용역 포함
- 2]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 마련 및 세법개정안 임시국회 제출 추진

- 자산기부 활성화 위해 부동산 기부시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 매각 허가 처분이 용이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
  - \* (현행)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매각시 주무관청 허가 → (개선) 기부받은 기본재산을 처분할때 기부자와 협의 등 일부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시 주무관청에서 적극검토
- '착한기부자'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포상 등 강화
  - \* 행안부 장관 표창 등 소규모 개최 → 정부포상으로 승격 수상 및 시상식 개최 규모↑
- (투명성) 기부금 모금단체가 수입 및 세부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기능 및 근거법령 개선\* 추진
  - \* (현행) 총 모집·사용액 등 단순 기재 → (개선) 사업별·비목별 세부내역 기재
    - ↳ 기부 관련 단체 의견수렴('23.1) 및 법령개정안 마련('23.上) → 시스템 고도화('23.下)
- 소규모 기부금 모금 단체의 결산 공시 의무('20년 시행, '23년 까지 제도기간)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
  - \* 공익법인 세법교실 확대·운영, 분기별 신규 기부금단체 맞춤형 교육 신설

## 2 민간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인프라 고도화

- (ESG 경영) 국내 ESG 공시체계 정비 및 중소·중견기업 대응역량 강화
  - 국내기업 ESG 경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ISSB(국제지속가능성기준 위원회) 국제표준·국내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ESG 공시제도 정비
    - \* KSSB(회계기준원내 산하기구) 설립 등을 통해 ESG 공시기준 및 검증 관련 국제기준 논의대응·규율체계 마련 등 추진 → 자본시장법령 등 관련법령 개편방안 검토
  - 수출 중소·중견기업의 ESG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K-ESG 가이드라인 구체화, 컨설팅, 우수기업 지원 등 추진
- (ESG 투자) 녹색분류체계를 개선하여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('22.12)하고,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\* 마련
  - \* 사회적프로젝트 범위·사례·예시, 워싱 방지 등을 위한 사전·사후보고 체계 등 제시
  - 투자활성화를 위해 구성기업의 파리기후협약 관련 규정 이행 기여도를 반영하는 파리기후협약 지수 개발
- (인프라 구축) ESG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전문인력 양성
  - 특성화 대학원·지역거점 대학교 등에 ESG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수요 등 감안해 장기 학위과정 개설 검토
- (추진체계)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인 ESG 협의회(기재부 차관 주재) 구축

### ③ 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법·제도기반 마련

- (제도정비) 「지방분권법」·「균형발전법」 통합을 통해 지방시대 관련 정책의 통합 추진체계(지방시대위원회) 구축
  - 지방분권·균형발전 계획을 통합한 지방시대 종합계획(‘23~’27) 수립
- (핵심과제) 재정·투자·교육 등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
  - ▶ (자치분권)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확충 및 지역 자율사업 유형 확대 등 제도개선
  - ▶ (지방투자) 지자체와 기업이 주도하는 '기회발전특구' 신설 등 지방투자 지원수단 마련
  - ▶ (공공기관 지방이전)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
  - ▶ (교육혁신) 교육자유특구 지정·운영 및 지방대학 활성화
  - ▶ (지능화 지역혁신) AI 등 지능화기술 기반 지역 디지털생태계 조성
- (고향사랑기부) 개인이 주소지외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·답례품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(‘23.1)
  - \* (기부금 활용)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주민복지사업 추진 (상한액) 연500만원/인(세액공제) 10만원까지 전액, 10만원 초과분 16.5% (답례품) 기부금의 30% 이내

### ④ 지방투자 확대, 인구유입 등을 위한 산단 활성화 추진

- (제도정비) 산단 개발 및 관리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혁신방안\* 마련
  - \* 산단 혁신 민간투자 활성화, 입주기업 중심 관리제도 설계 등 산단 혁신방안 마련
- (업종확대) 제조업과의 연계·융합을 통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<sup>1)</sup>을 산업단지 입주 허용 업종으로 확대<sup>2)</sup>
  - 1) (예시) 자동차정비업 입주허용을 통해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 등
  - 2)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개정(‘23.4/4)
- (민관협력 강화) 국가첨단전략산업 산단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자체-기업 간 협약체결 등 “상생 인센티브 체계” 마련(‘23.上)
  - \*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해외사례 검토,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진방안 마련